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9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3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·대응을 철저히 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, 금천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-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(안 제5조 ~ 제10조)
-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(안 제11조)
-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,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(안 제12조 ~ 제14조)

- 담당공무원 교육·훈련, 재정 지원 등(안 제15조 및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 위임 사항에 따라 금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에 대비하여 금천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 -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6조에 따라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한 것은 금천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수립으로 타당하다 봄
-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(안 제5조 ~ 제10조)
-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(안 제11조)
 - 금천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화학안전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.
-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,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(안 제12조 ~ 제14조)
 - 화학사고 발생신고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혼선을 방지하고

-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주민안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
- 담당공무원 교육·훈련, 재정 지원 등(안 제15조 및 제16조)

다. 검토의견

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안전 이행실태 점검 결과

□ 감독 개요

- (대상) 화학물질 제조·수입 사업장,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등 220개소(연간 100톤이상 59개소, 100톤미만 161개소)
- (기간) ' 23.7.10.~8.31. (8주간)

□ 감독 결과

- (전체) 감독실시 사업장 220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97개소(44.1%), 위반건수는 269건(MSDS 위반 223건,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 46건)
 - 사법처리* 2개소(4건), 과태료 89개소(254건, 185백만원), 시정명령 13개소(42건), 시정지시 78개소(185건) 실시
 - *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및 설치기준 미흡, 호흡용보호구 미지급,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등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해당

-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실태조사에서 '화학물질'을 다루는 작업장의 관리실태가 제도기준에 미흡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조사됨. 따라서 금천구 관내에 유사시 화학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의 모범적 정책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봄.
- 본 조례안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 위임에 따라 금천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·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